

【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원자력통제】

채용분야	원자력통제	분류체계	대분류	미개발
			중분류	미개발
			소분류	미개발
			세분류	원자력통제(기술원 자체개발)
기술원 주요사업	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핵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. 기관의 주요 임무는 원자력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, 수출입통제, 물리적 방호, 사이버보안, 핵비확산·핵안보 관련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등이 있음.			
직무정의	○ (수출입통제)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개발·생산·사용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이 우려국가 혹은 단체로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, 아래의 주요 업무로 이루어짐. ○ (물리적방호) 「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」에 따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지키기 위한 예방, 탐지, 대응 조치(물리적방호)에 대한 규제 활동으로서, 아래 주요 업무로 이루어짐.			
직무수행내용	1. 수출입통제 ○ (수출통제 심사업무) NSG 가이드라인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근거하여 수출물자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 및 규제대상을 특정하고,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수출물자의 허가에 관한 기술심사(수입자, 수입국의 특성 분석, 거부자 대상여부, 평화적 이용여부,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여부 등)를 수행 ○ (수출통제 기업지원업무) 제도 설명회 및 전시회 개최, 민원 상담 등 수출입통제 제도 이행 관련 피규제자의 인식도 및 제도 이행률 제고 활동 2. 물리적방호 ○ (위협평가 및 훈련평가)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체계 설계의 기준이 되는 위협(설계기준위협)을 설정하고, 시설이 해당 위협을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방호 체계를 보완하며, 이를 훈련 기반으로 평가하는 업무 ○ (심·검사) 원자력시설의 “물리적방호규정”을 관련 규제요건 및 기준에 의거 검토하고,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확인하는 업무			
전형방법	○ 서류심사 → 필기시험 → 토론면접 → 심층면접			
일반요건	연령	무관		
	성별	무관		
교육요건	학력	학사, 석사		
	전공	이공계열(원자력공학, 기계공학, 물리학, 화학공학, 전산학 등)		

필요지식	○ (수출입통제) 핵비확산 관련 지식, 원전 계통 관련 지식, 원자력시설에 관한 지식, 핵주기 관련 지식, 원자력안전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에 대한 지식, 전산코드 관련 지식, 국제정치 관련 지식 등 ○ (물리적방호) 방호 및 보안 지식, 위협 및 취약성 평가 관련 지식, 물리적 방호 시스템 및 설비에 관한 지식,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관련 지식
필요기술	○ (수출입통제) 원자력 관련 주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분석 기술, 핵물질량 계산 기술, 전산시스템 구축 기술, 통계처리 기술, 핵비확산 관련 국제기술 기준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이해 기술 ○ (물리적방호) 물리적방호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기준의 해석 및 적용 능력, 물리적방호 관련(위협평가, 취약성 분석, 장비 및 설비 성능시험 등) 이론 또는 실무 기술
직무수행태도	○ 논리적·객관적·분석적 사고, 팀원에 대한 배려 및 의사존중, 조직 및 팀원의 비전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 자세, 조직 구성원과의 협동력, 직무의 특성에 따른 비상업무 상시 대응 자세, 관련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자기개발,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 및 기한 준수 태도
필요자격	○ 해당없음
직업기초능력	○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기개발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 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
참고사이트	○ www.kinac.re.kr 및 www.ncs.go.kr